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46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송영길 · 양부남 · 박해철
최혁진 · 서미화 · 민병덕
박성준 · 박선원 · 허종식
박홍배 · 김성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유지하여야 함. 본래 재정신청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부터 존속하여 온 제도로서, 2007년 개정 전까지는 법원이 재정결정을 하고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2007년 개정 과정에서 사법 효율성을 이유로 지정변호사 제도를 폐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사에게 다시 공소유지를 강제로 맡기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음. 지정변호사 제도가 검사의 공소제기로 개정된 지 약 20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기소 판단을 한 검찰에게 법원 명령이라고 해서 억지로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기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무죄를 유도·구형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평가됨.

이에 현행법상 재정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대신, 법원에 의해 지정된 독립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실효적으로 견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262조의5 신설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당해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자(이하 “지정변호사”라 한다)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지정을 승낙하면 지정변호사로 확정된다.

⑦ 법원은 지정변호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변호사에게 사건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⑧ 지정변호사는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6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2조의5(지정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① 지정변호사는 제246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정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검

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지정변호사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수사기관의 장에게 사건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정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공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지정변호사가 능력 부족이나 중대한 신체상·정신상의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취소는 종전 지정변호사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지정변호사에게는 사건의 난이도, 직무수행 기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⑥ 지정변호사의 지정 및 승낙의 절차, 자격 요건, 보수 지급의 기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4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④ (생 략)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u>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당해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자(이하 “지정변호사”라 한다)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u>
⑥ <u>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u>	⑥ <u>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지정을 승낙하면 지정변호사로 확정된다.</u>
<u><신 설></u>	⑦ <u>법원은 지정변호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변호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u>

<신 설>

<신 설>

⑧ 지정변호사는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
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62조의5(지정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① 지정변호사는 제246
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정결
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
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검사로서
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지정변호사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수사
기관의 장에게 사건 관련 기록
의 열람·등사 및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정변호사는 직무를 수행
할 때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공정하게 고려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지정변호사가 능력
부족이나 중대한 신체상·정신

상의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취소는 종전 지정변호사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지정변호사에게는 사건의 난이도, 직무수행 기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⑥ 지정변호사의 지정 및 승낙의 절차, 자격 요건, 보수 지급의 기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